

**별표 2**

**위험자산자본 평가표(감독규정 제11조제3항)**

<별표 2>

**위험자산자본 부문별 평가항목(제11조제3항 관련)**

평가 부문	세부 평가부문	평가항목(평가지표)	비중
계열 회사 위험 (30%)	재무적 위험 <sup>1)</sup>	· 소속금융회사의 자본비율 (은행) 단순자기자본비율 (1종 금융투자업자) 순자본비율Ⅱ (3종 금융투자업자) 영업용순자본비율 (보험회사) 지급여력비율 (여신전문금융회사) 조정자기자본비율 (상호저축은행) 자기자본비율	20%
		· 소속비금융회사 <sup>2)</sup> 의 재무비율 (매출액 영업이익률, 이자보상배율, 자기자본대비 총차입금, 총차입금 대비 EBITDA <sup>3)</sup> , 유동부채 대비 현금성자산)	
	비재무적 위험	· (소속금융회사, 소속비금융회사 <sup>2)</sup> , 대주주, 대표이사) 시행령 제4조의 금융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·처벌,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처벌 <sup>4)</sup>	5%
· 신용등급 <sup>5)</sup> 의 변동		5%	
상호 연계성 (50%)	소유 연계성	· 소속금융회사의 소속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액 비중	10%
		· 소속비금융회사의 소속금융회사에 대한 지분율	10%
	내부거래	· 소속금융회사의 내부거래 수익 비중	5%
		· 소속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액 비중	5%
		· 특정 계열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수익 집중도	2.5%
		· 특정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집중도	2.5%
	공동투자	· 소속금융회사의 공동투자 비중	5%
	출자구조	· 소유·출자구조의 복잡성	5%
인사교류	· 소속금융회사와 소속비금융회사간 임원 겸직 등 인사교류의 적정성	5%	

내부 통제 및 위험 관리 <sup>6)</sup> (20%)	내부통제 정책 및 기준	· 내부통제정책 수립 여부 및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· 내부통제기준 마련 여부 및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, 감독규정 제7조에 관한 사항	5%
	내부통제 체계 운영	· 내부통제체계 운영의 적정성 및 법 제10조, 시행령 제11조, 감독규정 제8조에 관한 사항	5%
	위험관리 정책 및 기준	· 위험관리정책 수립 여부 및 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· 위험관리기준 마련 여부 및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, 감독규정 제9조에 관한 사항	5%
	위험관리 체계 운영	· 위험관리체계 운영의 적정성 및 법 제12조, 시행령 제13조, 감독규정 제10조에 관한 사항	5%

- 주 1) 재무적 위험 평가는 기업집단내에서 각 소속금융회사 및 소속비금융회사의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상 총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반영
- 2) 국내 소재의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상 총자산이 1조원 이상인 소속비금융회사를 대상
- 3) EBITDA= 영업이익 + 감가상각비 + 무형자산상각비
- 4) 행정처분 및 법원 확정 판결시 당해 연도의 평가에 반영
- 5) 국내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등급 반영
- 6)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충족(+1), 미충족(0)으로 평가하고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등급 산정